

국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급요령

—농림수산부 제공—

◇…농림수산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돼지고기 수출 종합대책에 따른 국제 규격돈(수출원료돈) 생산장려금 지급요령을 긴급 입수, 소개합니다. 수출원료돈을 생산하는 양돈농가는 3월 20일까지 수출단지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야 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<편집자 주>……………◇

1.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시 · 도지사
- 지원체계 : 농림수산부→축협중앙회→축협도지회→수출단지로 지정받은,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수출단지주체(이하 “수출단지주체”라 한다) 또는 지역축협 · 양돈업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→수출원료돈 생산농가
- 지원대상 : 수출단지주체 또는 조합과 돼지고기 수출원료돈(이하 “국제규격돈”이라 한다)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생산농가
- 사업기간 : ’94년 1월~12월
- 사업비 : 축발기금 120억원(기금사업비 보조)

2. 세부추진요령

가. 사업추진방향

- 시 · 도와 축협 및 관련기관에 돼지고기 수출 종합대책 시달
- 시 · 도 및 축협

—양돈농가, 영농조합법인, 계열화업체 및 수출업체
(도축 · 가공업체)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방향 홍보
—94년 2월~3월(2개월간) : 2회 이상 실시

나.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

- ① 생산농가와 수출단지주체 · 조합간의 계약체결
 -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는 수출단지주체와 월별 생산공급계약 체결
 -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농가는 관할 조합과 월별 생산공급계약 체결
 - ※ 조합이 수출단지주체인 경우에는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와 참여치 않은 생산농가를 구분하여 월별 생산공급계약 체결
- ② 수출단지주체 · 조합과 돼지고기수출업체(이하 “수출업체”라 한다)간에 계약 체결
 - 수출단지주체 · 조합은 수출업체와 월별 공급계약 체결
 - 수출단지주체 · 조합이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직접 · 대행(계약가공) 수출을 구분하여 월별 공급계약 체결
 - ※ 수출업체란 자체(1차 또는 2차가공시설) 가공시설을

보유하고 자기책임으로 도축·가공하여 직접 또는 대행(계약가공) 수출하는 업체

※ 생산농가(수출단지의 구성농가,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)가 개별적으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
③ 계약체결기간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간의 계약체결은 '94년 2월 1일~3월 20일까지로 함

④ 계약체결 결과 및 확정

◦ 계약체결 결과보고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'94년 3월 31일까지 동 계약 내용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

- 계약체결한 수출업체별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서와 생산농가별 월별계약두수 및 거래구좌를 보고

- 단, 수출단지주체가 조합인 경우에는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와 참여하지 않은 생산농가를 구분하여 보고

- 수출업체는 '94년 3월 31일까지 계약체결한 수출단지주체·조합의 소재지관할 시·도지사에게 동 계약내용을 보고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별로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서와 생산농가별 월별계약두수를 보고

- 동 계약내용 보고시 수출업체의 소재지, 대표자, 연간 월별수출계획서와 자체·계약가공업체의 연간 월별가공계획서 및 수출업체가 이용하는 도축장·가공장 현황을 반드시 첨부하여 보고

◦ 계약체결 실사 및 확정보고

- 시·도지사는 수출단지주체·조합 및 수출업체에서 보고한 계약 내용을 비교·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하여 부당한 계약체결 내용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'94년 4월 15일까지 계약체결 대상자를 확정하여 '94년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주체·조합 및 수출업체, 축협도지회, 축협중앙회에 통보하고 동시에 농림수산부에 보고

⑤ 계약체결내용 변경 및 승인

- 계약체결 대상자가 확정된 후 기 계약생산농가의 탈락, 추가계약대상자 발생 등으로 기존 계약체결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.

⑥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과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간에 계

약체결시에는 동 요령 9항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반드시 명시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은 TLC예비검사결과 및 실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후 지급됨을 명시

- 장려금 지급절차는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서 공동출하한 국제규격돈 두수와 TLC예비검사결과 합격두수 및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를 기준으로 수출단지주체·조합을 통해 생산농가의 거래구좌에 입금됨을 명시

- 생산농가가 계열화업체인 경우에는 계열주체와 수탁사육농가간에 상호 협의하여 장려금의 배분기준을 명시

다. 국제규격돈 출하·도축·가공·수출 및 수출증명서

① 수출업체 및 수출단지주체·조합

- 수출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 출하일자·장소·물량을 지정하여 국제규격돈의 공동출하를 요청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의 지정 요청에 따라 생산농가별로 구분하여 국제규격돈을 공동출하

- 수출업체는 동 출하물량의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출완료증명 관련서류(별첨1)를 매월 5일 이내에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 통보하고 동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

②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관

- 국립동물검역소 검역관은 수출단지주체·조합별 생산농가별로 검사시마다 확인하는 수출돈육·잔류물질(TLC) 예비검사 결과서를 수출단지·조합 및 수출업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동 결과서를 교부하여 주고 수출업체에서 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

라. 장려금 지급기준 및 배정

① 장려금 지급기준

- 생산농가에서 국제규격돈을 공동출하하여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

두수를 기준으로 수출단지 참여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

- 수출단지에 참여하는 생산농가 : 국제규격돈 두당 10,000원
-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는 생산농가 : 국제규격돈 두당 8,000원

② 장려금의 재원 및 배정

- 농림수산부는 '94 축발기금예산에 계상된 장려금을 5월 31일까지 축협중앙회에 일괄 배정
- '94 축발기금예산에 계상된 장려금이 부족할 경우 시·도지사는 지방비 예산에서 부족자금을 확보하여 관내 국제규격돈 생산농가에 지원

마. 장려금 지급절차

① 장려금 지급신청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수출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완료증명 관련서류(별첨1)를 첨부하여 생산농가별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매월 10일 이내에 관할 시·도지사에 신청
- 시·도지사는 관할 수출단지주체·조합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내용과 수출단지주체·조합이 계약체결한 수출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출해당두수에 대한 내용을 비교·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월 20일 이내에 축협도지회에 수출단지주체·조합별 생산농가별로 장려금 지급을 신청
- 축협도지회는 수출단지주체·조합별 생산농가별로 장려금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장려금 지급을 매월 25일 이내에 축협중앙회(판매사업부)에 신청

② 장려금 지급

- 축협중앙회는 축협도지회에서 관할 수출단지주체·조합이 생산농가별로 신청한 장려금 지급을 매월 30일 이내에 축협도지회에 지급
- 축협도지회는 축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장려금을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 익월 5일 이내에 지급
- 수출단지주체에게는 수출단지주체의 대표에게 생산농가별로 장려금지급명세를 통보하고 동 대표의 거래구좌에 직접 입금
- 조합에게는 조합별, 생산농가별로 장려금 지급(수출단지 미참여 생산농가의 해당조합)
-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축협도지회로부터 지급받은

장려금을 익월 10일 이내에 수출단지주체·조합의 생산농가별의 거래구좌에 입금하고 동 내역을 생산농가에 통보

바. 장려금 지급결과 정산보고

◦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별, 생산농가별로 장려금지급 정산결과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0일 이내에 관할 축협도지회에 보고

◦ 축협도지회는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서 장려금 지급 결과 정산보고를 검토하여 매월 20일 이내에 관할 시·도지사 및 축협중앙회에 보고

◦ 시·도 및 축협중앙회는 축협도지회가 보고한 장려금 지급결과 정산보고를 검토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

사. 장려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

① '93년도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

◦ '93년 12월 31일까지 국제규격돈을 수출업체에 출하하고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'94년 3월 20일 이전에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한하여 '93년도 장려금(이월 예산)으로 '93년도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

② '94년도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

◦ '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규격돈을 수출업체에 출하하고 TLC예비검사에 합격한 후 '95년 3월 20일 이전에 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한하여 '94년도 장려금으로 '94년도의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

◦ '94년 1월 1일부터 동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일(계약 완료일 '94년 3월 20일) 이전에 생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규격돈을 생산공급한 경우

- 수출단지에 참여한 생산농가는 수출단지주체에 신고, 수출단지에 참여하지 않은 생산농가는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에 신고하고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동 지침에 따른 계약체결 결과를 관할 시·도지사에 보고시 동 내용을 구분하여 보고

- 생산농가로부터 신고를 받은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동 기간내에 생산농가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에 국제규격돈을 공급하고 TLC 예비검사에 합격한 후

수출업체에서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에 대한 수출완료증명 관련서류(별첨1)를 필히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라 '94년도의 장려금을 처음 신청할 때 장려금 지급내용을 구분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 보고

- 수출업체에서는 동 기간동안의 생산농가별 계약체결 내용과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별첨1)를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고 수출단지주체·조합의 관할 시·도지사에 보고

아. 부당지급된 장려금에 대한 조치

- 시·도 및 축협중앙회는 수출단지주체·조합 및 수출업체에 상시 비치된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별첨2)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당하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9항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이행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

- 수출단지주체·조합은 부당하게 장려금 지급을 신청 또는 지급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시까지 기 지원된 각종 정책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수출단지 지정을 취소
- 수출업체는 국제규격돈 생산농가에 장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(별첨1)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 통보하였을 경우에는

-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출단지주체·조합으로부터 국제규격돈 생산공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차년도 계약대상업체에서 제외

- 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기 지원된 자금을 즉시 회수

- 시·도지사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출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출완료 증명내역(별첨1)을 매월 15일 이내에 축협중앙회(판매사업부)에 통보

- 축협중앙회는 수출업체에서 수출단지주체·조합별로 수출물량을 초과하여 수출완료 증명서류를 발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시·도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수출업체별로 종합 점검

-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

자. 우수한 국제규격돈 생산을 위한 의무 및 권장사항

① 생산농가

◦ 의무사항

-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사항을 반드시 이행
- 거세실시, 유해잔류물질 함유방지를 위한 비육돈후기사료 급여 및 출하전 휴약기간 준수

◦ 권장사항

- 종돈과 사료를 통일하여 균일한 규격돈을 생산

- 매년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생산비 절감 및 도체등급향상

- 출하체중 105~120kg 및 암수 분리사육

- ※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시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

② 수출단지주체·조합

◦ 의무사항

-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사항을 반드시 이행
-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반드시 정하여진 요령기준에 의하여 지급

- 장려금이 생산농가에 지급되기 이전에 타용도로 전용금지

◦ 권장사항

- ①의 국제규격돈 생산농가의 의무 및 권장사항을 철저히 관리 지도

- ※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시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는 동시에 지급된 총장려금에 대해서 축협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즉시 회수

③ 수출업체

◦ 의무사항

-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사항을 반드시 이행
- 생산농가에 장려금이 정당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에 관련된 일체의 증빙서류(별첨1)를 반드시 정확히 수출단지주체·조합에 통보하고 시·도지사에 보고

◦ 권장사항

- TLC예비검사 결과와 수출이 완료된 수출해당두수가 가능한 일치되도록 하고 PSE육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가공기술 및 ①의 생산농가 의무·권장사항에 대한 사양관리기술 지도

- ※ 국제규격돈 생산공급계약 체결 및 의무사항을 불이행시는 동 요령의 제8항을 적용